

I . 계획의 개요,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① 법적근거 및 수립경위

1.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 제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 ▷ 제7조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2. 수립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05.1.2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제정('06.1.27)
-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수립』 연구용역 시행
 -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06.03~'07.01)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 (안)에 관한 지자체 토론회('11.07),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자문회의('11.12), 정책토론회('12.1)
 -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11.03~'12.02) & (주)평화엔지니어링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 (안)에 관한 국가교통안전실 무위원회 심의('12.02.21)
- 2012. 3.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12~'16) 수립
 - ▷ 수행주체 : 국토해양부 장관
 - ▷ 지방도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합리적 근거 및 투자기준 마련
-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의무화(법 제7조)

② 계획수립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배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05.1.27),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12~'16) 수립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요구되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의 요구가 증대되었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라, 승강기 및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집→보행→여객시설→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목적지」라는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위험한 횡단시설, 좁은 보도, 불법주정차 등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교통약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2006. 1. 28.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표 1-1> 교통약자 용어정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p>교통약자</p>	<p>○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p> <p>- 고령자 : 65세 이상(고령자중 장애인은 장애인에 포함시킴)</p> <p>- 어린이 : 5 ~ 9세</p> <p>- 영·유아 : 0 ~ 4세</p>
<p>이동편의 시설</p>	<p>○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함</p> <p>- 교통수단 :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수단(버스, 도시철도, 철도, 특별교통수단 등)</p> <p>※ 특별교통수단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p> <p>- 여객시설 :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등)</p> <p>- 도로시설 : 도로와 그 외의 준용도로(보도, 육교, 지하보도, 장애인 주차구역 등)</p>

2.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계획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도달방안을 마련.
-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③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과업의 성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
 - ▷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토록 정책의 목표, 방향 및 과제를 제시
 -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
 - ▷ 지방정부가 수립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방향과 지침 제시
 - ▷ 지방도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합리적 근거 및 투자 기준 마련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 장성군 전역
- 시간적 범위
 - ▷ 기준연도 : 2010년
 - ▷ 계획년도 : 2012년 ~ 2016년
- 내용적 범위
 - ▷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 보행환경 개선

<표 1-2> 과업의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군 일반교통현황 ▪ 교통약자관련 계획검토 ▪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실태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분석 ▪ 이동편의시설 이용만족도 조사·분석 ▪ 교통약자별 이동편의시설 이동경로조사·분석 ▪ 보행환경 실태조사·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도출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목표 설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추진전략 설정
추진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도입 - 특별교통수단 도입 ▪ 보행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 보행우선구역 지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 교통약자별 교통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을 감안한 이동편의증진 도모 ▪ 교통약자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군 재원규모검토 ▪ 투자소요비용 산출 ▪ 재원조달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과제별 재원조달 등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평가 및 사후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효과의 평가 및 계획의 사후 관리체계

4] 교통약자 관련계획 검토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2005. 1. 27.에 제정되어 2006. 1. 28.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 4.에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 2012. 3 에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이 수립되어,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포함하는 16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관련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10~'14)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편의증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근거.
- 제1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00~'04), 제2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기초연구 실시('09.10~12, 한국장애인개발원).
- 『편의증진으로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비전으로,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와 무장애 건축물의 보편화 추구를 추진방향으로 설정.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편의시설 설치율을 '14년까지 88%, 적정 설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가. 목적 및 기본방향

-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사회 실현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나. 주요내용

-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편의증진 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처하고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추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새로 마지플랜 2015』으로 명명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등 3개 추진과제 설정.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추진과제에는 고령 친화적 대중교통 및 철도 및 지하철의 승강설비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보행우선구역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확대 등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포함 되어 있음.

3.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

-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
-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계획 수립을 추진.
- '93년 UN ESCAP의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을 근간으로 장애계의 요구에 의해 계획 도입.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4개 분야별 과제 제시.

○ 분야별 과제

-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가. 수립 배경

- 도시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 근거.

나. 계획의 성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
- 향후 수립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

(1) Easy Move Plan 2011의 미션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여야 함.
 -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이 안전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함.
(Universal Design)

(2) Easy Move Plan 2011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교통수단·교통시설·보행환경 등이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인간중심 교통 체계로의 전환.
 - ▷ 교통약자가 아무런 장애 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상징

-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
 - ▷ 첫째, 보행로 장애물 제거 등 저비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부분부터 집중 개선
 - ▷ 둘째, 주요 거점지역(Key Station)과 간선이동로(Corridor)를 중심으로 무장애화 추진
 - ▷ 셋째, 이용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낮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집중 개선
 - ▷ 넷째, 이동실태조사, R&D, 사회 인식개선 등을 통해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3) Easy Move Plan 2011의 세부추진 과제

▼ 이동선(線)의 배리어 프리화

-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되, 보도개선·시설물 정비 등 우선추진.
 - ▷ 이동빈도가 높은 보행로 등에 대해 단차 제거, 기울기 완화,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의 사업 추진
 - ▷ 보도 위 불법주차 억제, 보행 장애물(지하철환기구, 가로수, 시설물 등) 정비, 음향신호기·블라드 개선·확충 등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효과를 보아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파.
 -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 도입,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신호기,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및 개선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설계·계획 단계부터 건축물·도시 등을 무장애화 추진.
 - ▷ 일본은 건축물의 배리어프리를 평가하는 하트빌딩(Heart building)제도 운영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이동편의 거점 추진

- 주요 거점지역(Key Station)를 중심으로 간선이동로(Corridor)를 확보·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
 - ▷ 우선 교통약자의 거주·근무지의 분포도를 맵핑(Mapping)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실태 파악
 - ▷ 지자체 지방교통약자계획 수립 시 거점지역 및 이동로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
-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 주요 거점지 및 이동로에 집중 투자하고 기타 지역은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
 -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집중 배치·운행을 통하여 거점지역을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허브(Hub)지역으로 육성
 - ▷ 지자체별 이동편의센터 내 콜시스템망 구축 등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장애인택시회사, 버스회사 등과 연계
 - ▷ 거점 도시철도역에는 교통약자 지원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교통편의 제공

▼ 시급성이 높은 대중교통 이동편의 우선 제고

- 버스 이동 시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고,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확충.
 - ▷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31.5%까지 보급
 - ▷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확충하고 정류장 주변 환경 개선

- ▷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 정보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버스정류장을 개선
-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46%까지 보급.
 - ▷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최소도입 규모 : 인구 100만 이상 도시 80대, 인구 30만~100만 도시 50대, 인구 10만~30만 도시 20대
-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운영.
- 지하철·철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선·확충하되, 특히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중점.
 - ▷ 교통약자 수직이동 부담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전철역사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 **맞춤형 교통안내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정보를 다변화하여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
 - ▷ 교통약자 필요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 정보 갱신
 - ▷ 교통약자용 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동정보센터의 운영 검토(TAGO와 이동정보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 ▷ 교통약자의 요구에 맞춰 음성, 문자, 유·무선전화, PDA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수단·시설에서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 ▷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수화·통역서비스 개선·확충
 - ▷ 주요 철도·공항역에 장애인·노약자 우선창구와 도우미 서비스 운영 확대 등 열차·항공기 이용 서비스 제고

-
-
- 노약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지속적으로 시행.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라는 의식으로 전환하고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대책 마련.
 - ▷ 지자체, 교통사업자 등에 홍보책자, VNR(동영상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및 범국민 캠페인을 위한 교통약자 홍보위원회 구성 검토
 -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방교통약자계획에 반영
- 시민·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이동편의 정책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
 - ▷ 건축사협회 자체교육,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에 이동편의시설설치·관리매뉴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 ▷ 장애인·노인 복지관 등을 통해 이동편의시설 운영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 장기적으로 교통약자 관련한 교통의 세부분야별(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안전, 대중교통 등) 전문가 양성

▼ R&D 등

- 교통수단 관련 R&D
 - ▷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 ▷ '0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09년 이후 양산체제를 갖춰 대량 보급
 -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개발
 - ▷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에 필요한 운전 장치 또는 차량개발
- 여객시설 관련 R&D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이용 편의 증진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내 시설개선 방향 설정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R&D 등

▷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도로점용물 설치 등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 기타

○ 어린이보호구역 제정

어른에 비해 판단력과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1995. 9.부터 유치원·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시행

○ 노인보호구역 제정

노령층의 출입이 잦은 양로원·노인병원 등을 대상으로 노령자도 정상인과 비슷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령자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제정 2007. 5. 1)

<표 1-3> 관련계획별 비교(국가계획)

구 분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장애인복지발전 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근거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03~'12) ¹⁾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목 적	편의증진으로 통합 적 사회 환경 실현	저출산·고령화 사 회 성공적 대응으 로 활력 있는 선 진국가로 도약	장애인의 권리 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 사회 구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제시
주요내용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 ·무장애인 건축물의 보편화 추구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고령 친화적인 승 강설비 확충 ·저상버스 보급확대 ·보행우선구역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확대	·장애인 복지서비 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 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실현 ·장애통합적 접근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투자재원 조달방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15px;">관련계획</div>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15px;">상호보완</div>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15px;">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div> </div>				

5. 장성군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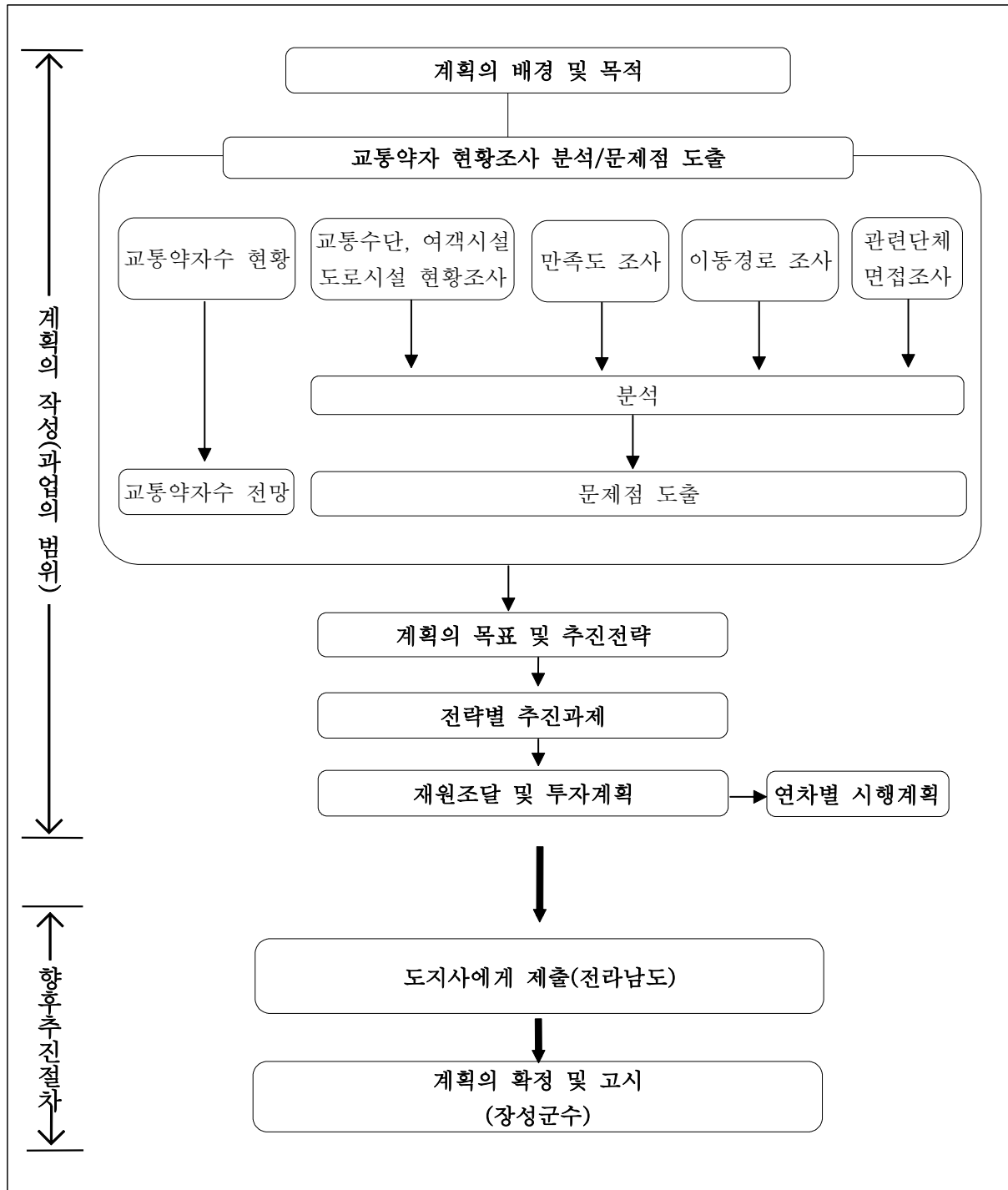
<표 1-4> 제2기 장성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비 전	추 진 사 업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실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통합 구현 ·다양한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복지 실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현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복지 실현

1) '93년 UN ESCAP(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에서 새로운 10년계획('03-'12)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구체적인 실천계획(5개년 계획) 수립 권장

5 과업의 수행과정

- 장성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본 과업의 범위인 계획의 작성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확정 및 고시됨.



[그림 1-1] 과업의 수행과정도

⑥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 예측

1. 우리나라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 전국 교통약자 현황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수는 12,290천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4.4%를 차지.
- 총 인구대비 장애인 3.1%, 고령자 10.9%, 임산부 0.9%, 어린이 4.9%, 영·유아를 동반한 자 4.6%을 나타내고 있고,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5> 전국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2010년)

(단위: 명, %)

구 분	총 인구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인 구(명)	50,515,666	12,290,943	1,556,896	5,506,352	470,171	2,457,829	2,299,695
총인구대비	100.0%	24.4%	3.1%	10.9%	0.9%	4.9%	4.6%
교통약자대비	-	100.0%	12.7%	44.8%	3.8%	20.0%	18.7%

※ 주)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중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고령자(65세 이상) 제외

※ 자료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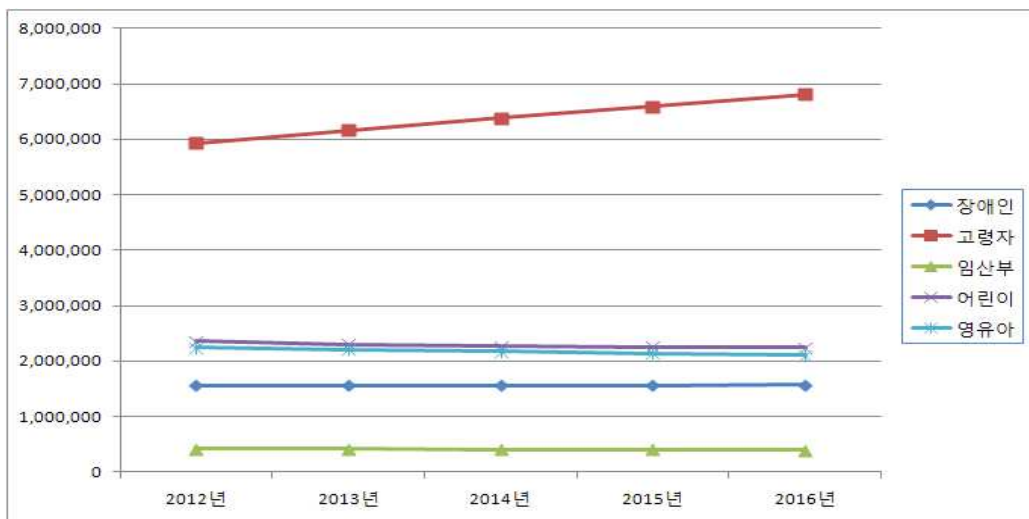
□ 전국 교통약자 예측

- 우리나라 장래 총 인구는 2012년 50,731천명에서 2016년 50,968천명으로 평균 0.1% 증가가 예측되지만, 교통약자 인구는 2012년 12,514천명(24.7%)에서 2016년에 약 13,120천명(25.7%)으로 전망되었고, 연평균 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1-6> 전국 장애 유형별 교통약자 인구 추계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교 통 약 자	장애인	인 구	1,560,993	1,563,046	1,565,102	1,567,160	1,569,221	0.1
		구성비	3.1	3.1	3.1	3.1	3.1	
		증감율	-	0.13	0.13	0.13	0.14	
	고령자	인 구	5,934,542	6,162,427	6,385,930	6,595,077	6,806,491	3.5
		구성비	11.7	12.1	12.6	12.9	13.4	
		증감율	-	3.8	3.6	3.3	3.2	
	임산부	인 구	421,700	415,499	409,297	401,028	398,961	-1.4
		구성비	0.8	0.8	0.8	0.8	0.8	
		증감율	-	-1.5	-1.5	-2.0	-0.5	
	어린이	인 구	2,356,358	2,305,783	2,266,721	2,250,992	2,240,203	-1.7
		구성비	4.6	4.5	4.5	4.4	4.4	
		증감율	-	-2.2	-1.7	-0.7	-0.5	
	영유아 동반자	인 구	2,240,240	2,210,943	2,177,890	2,142,380	2,105,754	-1.4
		구성비	4.4	4.4	4.3	4.2	4.1	
		증감율	-	-1.3	-1.5	-1.6	-1.7	
	소 계	인 구	12,513,833	12,657,698	12,804,940	12,956,637	13,120,630	1.2
		구성비	24.7	24.9	25.2	25.4	25.7	
		증감율	-	1.2	1.2	1.2	1.3	
총 인 구		50,731,317	50,813,623	50,880,429	50,931,739	50,967,603	0.1	

※ 통계청 : 「장애인구추계」, 2011



[그림 1-2] 전국 유형별 연도별 교통약자 추이

□ 사회·경제적 여건 전망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최근 4년간 연평균(0.8%)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수단을 확충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확보의 필요성 대두.
 - 출산율 추이 : '05년(1.07명)→'06년(1.12명)→'07년(1.25명)→'10년(1.22명)으로 전 세계 평균(2.5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출산율 전망 : '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0.9%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2016년에는 전체인구 중 1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에서 20%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2. 장성군 교통약자 현황

□ 인구 및 가구 현황

- 장성군의 2010년 기준 인구는 46,514명으로 남자가 23,659명, 여자가 22,855명으로 남녀 비율이 1대 0.983 비율이며, 최근 6년간(2005년~2010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인구밀도는 95.9인/km²에서 89.7인/km²으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세대수 현황으로는 20,938세대로 세대 당 2.2명으로 세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세대 당 인구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핵가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표 1-7> 장성군 인구 및 가구 현황

(단위: 호, 명, 인/km²)

연 도	세대수	인 구			세대당 인구	인구밀도
		계	남	여		
2005년	20,228	49,710	25,271	24,439	2.5	95.9
2006년	20,119	48,507	24,687	23,820	2.4	93.5
2007년	20,257	48,072	24,534	23,538	2.3	92.7
2008년	20,289	47,399	24,251	23,148	2.3	91.4
2009년	20,491	47,047	24,100	22,947	2.3	90.7
2010년	20,938	46,514	23,659	22,855	2.2	89.7
연평균 증가율	0.7%	-1.3%	-1.3%	-1.3%	-2.5%	-1.3%

※ 자료 : 장성군 통계연보 2011(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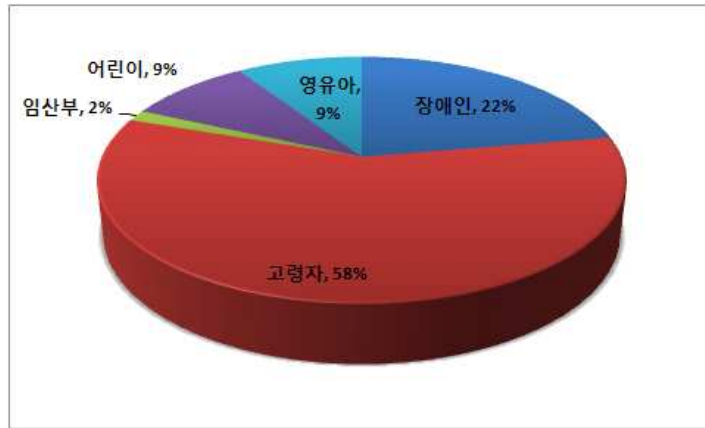
- 장성군 행정구역의 1읍과 10면별 인구분포는 장성읍 13,446명, 진원면 3,276명, 남면 3,806명, 동화면 2,114명, 삼서면 3,048명, 삼계면 7,160명, 황룡면 4,546명, 서삼면 1,707명, 북일면 1,616명, 북이면 3,255명, 북하면 2,540명으로 장성군 인구의 약 28.9%가 장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일면이 1,616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음.

<표 1-8> 장성군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구 분		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장성군	교통약자수	19,617	4,353	11,303	406	1,760	1,795
	총인구대비(%)	42.2%	9.3%	24.3%	0.9%	3.8%	3.9%
	교통약자대비(%)	100%	22.2%	57.6%	2.1%	9.0%	9.1%
전 국	교통약자수	12,290,943	1,556,896	5,506,352	470,171	2,457,829	2,299,695
	총인구대비(%)	24.4%	3.1%	10.9%	0.9%	4.9%	4.6%
	교통약자대비(%)	100%	12.7%	44.8%	3.8%	20.0%	18.7%

- ※ 주) 1. 영유아는 0~4세, 어린이는 5~9세, 고령자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 2. 장성군은 2010년말 기준 통계연보(2011) 자료이며, 전국은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상의 2010년말 기준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4.4%에 해당하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장성군은 <표 1-8>과 같이 총인구대비 교통약자의 비율이 약 42%로 전국 평균보다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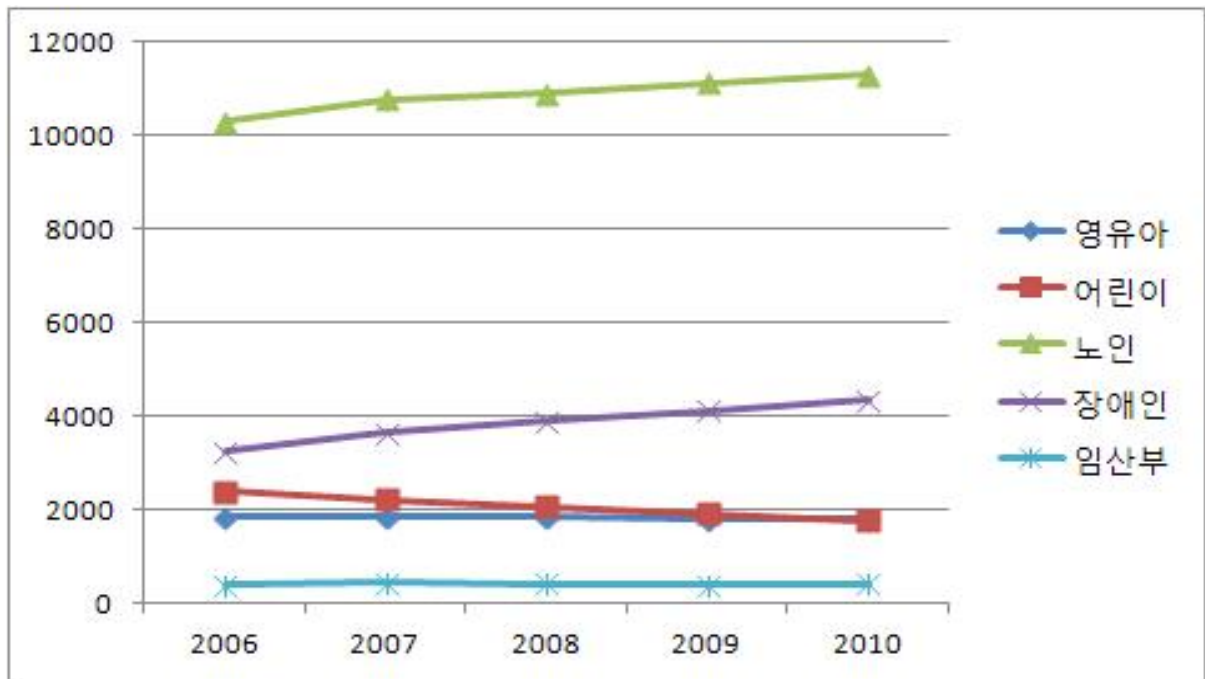


[그림 1-3] 장성군 교통약자 비율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장성군 교통약자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약자별 현황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어린이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산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9> 장성군 교통약자 현황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교통약자 총계	18,165	18,942	19,133	19,343	19,617	1.9%
영·유아	1,832	1,852	1,839	1,783	1,795	-0.5%
어린이	2,396	2,221	2,061	1,925	1,760	-7.4%
고령자	10,307	10,778	10,913	11,124	11,303	2.3%
장애인	3,248	3,649	3,904	4,121	4,353	7.6%
임산부	382	442	416	390	406	1.5%



[그림 1-4] 장성군 교통약자별 현황추이

가. 장애인 현황

- 장성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06년 3,248명에서 2007년 3,649명, 2008년 3,904명으로 증가하여, 매년 장애인수가 7.6%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0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이 2,175명으로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인 615명(14.1%), 시각 406명(9.3%) 순으로 많음.

<표 1-10> 장성군 등록 장애인 현황

연별	합계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기 타
2006년	3,248	1,712	303	338	428	245	6	147	54	15	23	8	3	14	25	-
2007년	3,649	1,855	326	357	486	256	8	200	60	15	27	11	3	18	27	-
2008년	3,904	2,012	342	400	528	258	5	187	61	19	34	11	3	19	25	-
2009년	4,121	2,160	330	398	554	270	5	216	63	21	41	15	3	21	24	-
2010년	4,353	2,175	347	406	615	320	10	301	62	14	48	14	2	21	18	-
증가율 (%)	7.6	6.2	3.4	4.7	9.5	6.9	13.6	19.6	3.5	-1.7	20.2	15.0	-9.6	10.7	-7.9	

※ 자료 : 장성군청 통계연보 2011(전라남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장애등급별로 2006년 이후 5년간(2006년~2010년) 1급 및 2급 장애인은 각각 -7%, -0.8% 감소, 3급 장애인은 1.35배, 4급 장애인은 1.43배, 5급 장애인은 1.52배, 6급 장애인은 1.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1> 장성군 장애인 등급 현황 (단위: 명)

연 별	합 계	1급장애	2급장애	3급장애	4급장애	5급장애	6급장애
2006년	3,248	314	620	573	521	613	680
2007년	3,649	317	644	653	580	731	724
2008년	3,094	314	606	700	639	809	836
2009년	4,121	291	631	738	724	906	831
2010년	4,353	292	615	772	745	930	899

※ 자료 : 장성군청 통계연보 2011(전라남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나. 고령자 현황

-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11,303명이고,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성읍이 2,66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이면, 황룡면, 남면 등의 순임.

<표 1-12> 장성군 읍면별 고령자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장성읍	2,315	2,444	2,488	2,543	2,664	3.6%
진원면	789	833	845	862	887	3.0%
남 면	959	1,004	1,027	1,031	1,038	2.0%
동화면	626	656	650	662	665	1.5%
삼서면	1,005	1,023	1,020	1,040	1,054	1.2%
삼계면	916	962	979	1,000	995	2.1%
황룡면	1,007	1,065	1,065	1,090	1,070	1.5%
서삼면	434	448	452	465	466	1.8%
북일면	517	535	538	553	566	2.3%
북이면	1,004	1,021	1,046	1,084	1,081	1.9%
북하면	836	787	790	786	817	-0.6%
합 계	10,307	10,778	10,913	11,124	11,303	2.3%

※ 자료 : 장성군청 통계연보 2011(전라남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다. 임산부 현황

- 장성군 출생률을 기준으로 하여 임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전에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현재 406명으로 연평균 1.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3> 장성군 읍면별 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장성읍	88	110	118	106	122	8.5%
진원면	18	20	18	22	27	10.7%
남 면	21	36	39	21	29	8.4%
동화면	11	10	12	11	10	-2.4%
삼서면	22	21	19	15	18	-4.9%
삼계면	118	150	120	120	112	-1.3%
황룡면	52	44	31	36	31	-12.1%
서삼면	18	11	7	9	6	-24.0%
북일면	11	8	11	14	11	0.0%
북이면	14	20	31	21	28	18.9%
북하면	11	14	10	15	12	2.2%
합 계	382	442	416	390	406	1.5%

※ 자료 : 2011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출생아수」

라. 영·유아 및 어린이 현황

- 장성군 영·유아수는 2006년 1,832명에서 2010년 1,795명으로 - 0.5%의 감소추세, 어린이수는 2006년 2,396명에서 2010년 1,760명으로 - 7.4%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4> 장성군 어린이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영·유아(0 ~ 4세)	1,832	1,852	1,830	1,783	1,795	-0.5%
어린이(5 ~ 9세)	2,396	2,221	2,061	1,925	1,760	-7.4%
합 계 (0 ~ 9세)	4,228	4,073	3,891	3,708	3,555	-4.2%

※ 자료 : 장성군청 통계연보 2011(전라남도 「주민등록인구통계」)

3. 교통약자 예측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장성군 교통약자 현황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별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다만 임산부의 경우 추세선에 따른 증가율을 적용 요약한 것임.

<표 1-15> 장성군 교통약자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통약자 구분	다중회귀분석 식	R-Square 값
영·유아	$Y = -4.2143X^2 + 10.986X + 1833.6$	0.923
어린이	$Y = 3.1429X^2 - 175.66X + 2565$	0.999
고령자	$Y = 10,320X^{0.0552}$	0.988
장애인	$Y = 3233.3X^{0.1784}$	0.996
임산부	-	-

- 장성군 교통약자의 추정은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노인(65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추이를 감안하여 예측하였으며, 임산부는 출생률의 추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출현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고령자 및 장애인, 임산부의 수는 증가하나,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수의 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대비 교통약자 비율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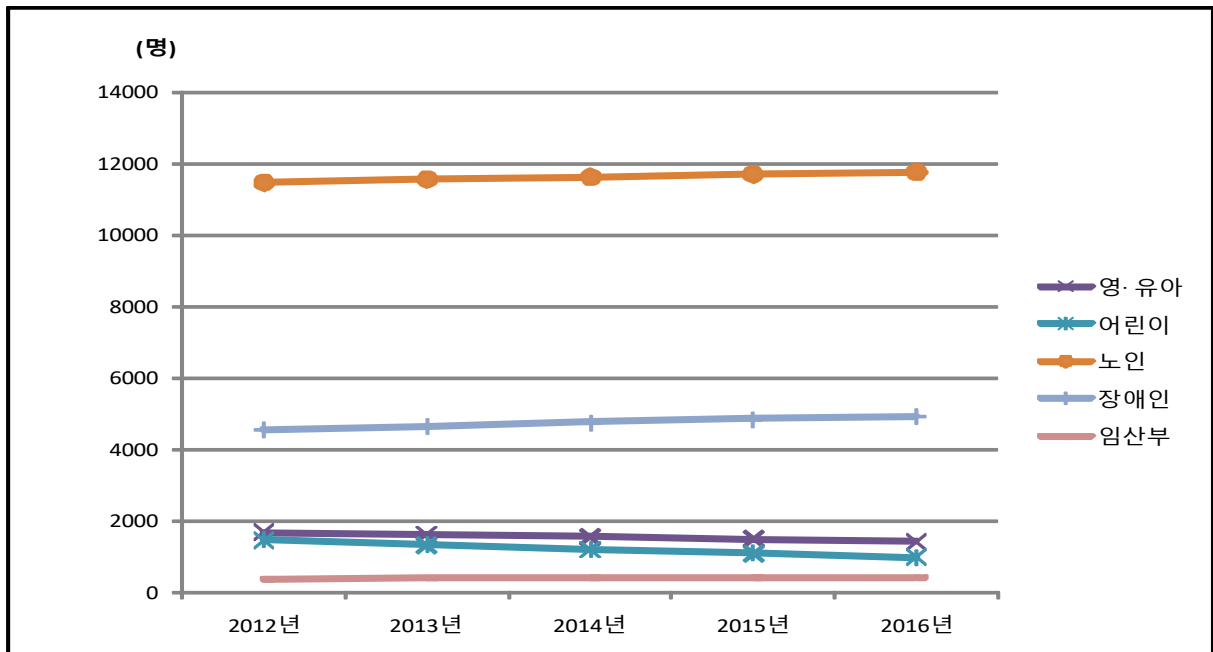
<표 1-16> 장성군 교통약자 예측 결과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12,513,833 (24.7%)	12,657,698 (24.9%)	12,804,940 (25.2%)	12,956,637 (25.4%)	13,120,630 (25.7%)	1.2%
교통약자예측	19,672	19,697	19,706	19,689	19,657	-0.02%
영·유아	1,704	1,652	1,591	1,522	1,445	-4.0%
어린이	1,489	1,361	1,239	1,123	1,013	-9.2%
고령자	11,490	11,575	11,651	11,719	11,781	0.6%
장애인	4,575	4,686	4,785	4,876	4,959	2.0%
임산부	414	423	440	449	459	2.6%

※ 주) 임산부의 예측치는 증가율을 감안한 추정치임

※ 자료 : 전국 예측은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임



[그림 1-5] 장성군 교통약자 예측추이

4. 장성군 교통사고 현황

가. 교통사고 안전지수에 의한 장성군 교통안전 정도

- 장성군의 교통안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자치단체의 교통사고자료와 관련 기초자료(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거리) 대비 교통사고 발생요인(중사고차, 중사고인), 희생요인(사망자차, 사망자인, 사고심각도, 보행사망자인), 도로환경요인(사망자도로, 중사고도로) 등 3개 요인 8개 기초변수를 산출하여 해당 도시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설명하는 사회지표인 교통안전지수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종합 교통안전지수는 교통 관련 여러 요인들 중 교통사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를 교통사고 발생자료와 비교하여 산출된 지수로 종합적인 교통안전 수준의 평가를 위한 지표임.

$$\text{종합교통안전지수} = \frac{\text{Target}(\max) - x_i}{\text{Target}(\max) - \text{Target}(\min)} \times 100$$

< 여기서, Target(max, min)은 각각 최대·최소 요인 합계값

x_i 는 특정지역의 요인합계 값임 >

(※ 값이 클수록 안전도는 높음. 단, 분자에 x_i -Min을 적용할 경우는 이와 반대로 값이 클수록 위험도가 높음)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표 1-17> 장성군 교통여건

구 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47,486	22,391	399.72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11(외국인 포함)

<표 1-18> 장성군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67	16	454
중 사고	112	16	192
보행사상자	-	6	26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11

- 장성군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9%(439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 또한 4.3%(933대) 증가하였으며, 도로연장은 3.5%(14.32km) 감소하였음.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7.6%(40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1.1%(2명) 감소하였고,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0%(2명) 감소하였음.

□ 교통사고 발생률

<표 1-19> 장성군 교통사고 발생률

구 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중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중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50.02	235.86	7.15	33.69	0.03	0.38	0.28	0.04
백분위(%)수준	75.0	78.3	65.3	61.6	70.0	59.4	95.9	78.6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11

- 전남 장성군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8명으로 59.4% 수준,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는 33.69명으로 61.6% 수준으로 나타남.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표 1-20> 장성군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 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1616	0.7139	-0.7152	0.0947	73.3	3.9
백분위(%)수준	77.6	58.2	86.9	-		

※ 주) 1. 요인합계 = 적재값(W₁)×발생요인+적재값(W₂)×희생요인+적재값(W₃)×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값 = $\frac{Max-x_i}{Max-Min} \times 100$,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11

- 설정된 목표 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0년도 전남 장성군의 교통안전지수는 73.3점으로 전년도의 69.4점 보다 3.9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7.6%, 희생요인 58.2%, 도로환경요인 86.9%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1> 2010년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순위

전라남도 안전지수			군 그룹 안전지수			전국 안전지수		
순위	지역	안전지수	순위	지역	안전지수	순위	지역	안전지수
1	전남 신안군	87.7	1	충북 증평군	91.3	1	충남 계룡시	98.6
15	전남 장성군	73.3	38	전남 장성군	73.3	136	전남 장성군	73.3
22	전남 영암군	60.7	86	전북 장수군	45.1	228	전북 장수군	45.1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11

- 위의 표와 같이 2010년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74.9점, 이중에서 충남 계룡시가 98.6점으로 1위를 기록하여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전북 장수군은 100점 만점에 45.1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장성군은 전국 평균 이하인 73.3점으로 13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84개 군 그룹내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71.5점이었으며, 이 중에서 충북 증평군이 91.3점으로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남 신안군(87.7점), 장성군은 73.3점으로 38위, 전북 장수군은 45.1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나.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 경찰청에서 매년 선정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일정한 도로 구간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으로, 교통사고 전수조사 결과로 선정된 지점을 말하며, 교통사고 잦은 곳의 선정기준은 인피가 동일지점에서 1년간 다음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말함.

▷ 특별시 및 광역시 : 5건

▷ 일반시 : 3건

▷ 기타지역 : 3건

- 장성군에서는 2011년 기준 총 5개 지점에서 3건 이상의 인피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장성군 관할 군도는 1개소도 없으며, 5개 지점 모두 일반국도로써 향후 개선이 요구됨.

<표 1-22> 장성군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2011년 기준)

지점수 (개소)	지 점 명	발생 건수	사상자				비고
			계	사망	중상	경상	
1	장성읍 단광리 장성오거리 (장성주유소, 삼가동 오거리)	3	4	0	3	1	일반 국도
2	동화면 용정리 동화사거리	3	4	1	0	3	
3	장성읍 단광리 프라임주유소삼거리	6	7	0	1	6	
4	남면 분향리 시목사거리(유림농원)	3	3	0	0	3	
5	남면 월곡리 덕촌교차로	3	3	1	1	1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2년 장성 사고 잦은 곳 현황, 2011.